

의왕시 읍부즈만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읍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8일

의왕시장

1. 위촉 분야 및 인원

구분	위촉 분야	인원	위촉 기간	비고
공개모집	읍부즈만	1명	4년(단임) 2026. 9. 1. ~ 2030. 8. 31.	

2. 주요 업무

- 가.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나.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다. 의왕시장 및 의왕시의회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라.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마. 시장 및 시의회에 읍부즈만 운영에 대한 운영상황보고 및 공표
- 바. 읍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사.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아. 읍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자. 그밖에 읍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위촉 신분 및 활동

- 가. 위촉 신분: 위촉직(비공무원)
- 나. 활동 방법: 주 3일(월, 수, 금) 09:00~18:00 읍부즈만 활동 수행
- 다. 활동 수당: 150,000원 / 1일

4. 지원 자격

가. 의왕시 읍부즈만으로서 위촉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읍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부즈만이 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의왕시 퇴직 공무원

나.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옴부즈만의 구성)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준용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다음 각호의 직은 옴부즈만과 겸직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17조)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소속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할 경우 옴부즈만 위촉 시까지 반드시 겸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1) 또는 2)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촉되지 않거나 위촉된 후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5.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 ※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심사 일정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 심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한 적격요건 심사

- ※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 옴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에 대한 면접

다. 시의회 동의 절차: 위촉 동의안 심의 및 의결

- ※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최종 위촉됨

라. 최종 발표: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6. 지원서 접수

가. 공고 기간: 2026. 6. 8.(월) ~ 6. 18.(목)

나. 접수 기간: 2026. 6. 16.(화) ~ 6. 18.(목) (3일간)

다. 접수 장소: 의왕시청 본관 2층 감사담당관 사무실

라.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제출

(방문 접수)

-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이메일)

- 제출 서류 보내실 주소: helloyong88@korea.kr
- 이메일 신청자는 반드시 유선(031-345-2064)으로 접수 확인(수신 확인 및 누락 방지)
-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지원서에 대하여 유효
- 이메일 제출 시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마. 제출 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
-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4) 비당원확인서 1부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7)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명서류 각 1부)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단,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외국어 기재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

7. 유의 사항

가.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결격사유, 겸직금지 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 지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 전형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
- 라. 읍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바.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함
- 사.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의왕시 읍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의왕시의 해석에 따름
- 아.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의왕시 감사담당관 조사팀(☎031-345-2064)으로 문의